

발급번호 제 호

(앞쪽)

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 결과 통지서

신청인	목재산업 등록번호(자가소비자는 생략 가능)	목재산업 종류
	상호	대표자 성명
	본사 주소	전화번호/Fax
	공장 주소	전화번호/Fax
신청내용	목재제품 명칭(모델 명칭)	
	목재제품 용도	
	생산·수입 연월일	
	생산국·생산업체명(수입품일 경우)	
	생산량·수입량	
검사결과	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「목재제품 규격·품질기준」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적고, 그 세부내역은 뒤쪽에 작성	

유의사항

자가소비자란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·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최종 소비자가 되어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5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신청한 목재제품 규격·품질 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검 사 기 관 장

직인

※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